

# LAW Common Sense Information

남자 만 18세,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으나,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을 할 수 없고 혼인신고 수리도 안된다.



글/ 박종복 변호사

**Q**

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중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. 아버지인 본인이 반대를 하자 아들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한다.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, 아들은 현재 만 18세 5개월이다.

**A**

**민** 법 제807조에는 “남자 만 18세,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을 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귀하의 아들은 현재 만 18세 5개월로서 법적인 혼인적령에 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여자친구도 만 16세 이상이라면 역시 혼인적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혼인을 할 수는 있다.

그런데 혼인적령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(민법 제808조) 만약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동의의 방식은 혼인신고서에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혼인신고서에 동의의 의사를 부기하는 것으로써 한다. 현행 민법상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된다. 만약 귀하의

아들 및 그 여자친구가 쌍방 부모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공무원으로부터 그 신고수리가 거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. 혹시 착오로 잘못 호적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 결국 만 18세 5개월된 귀하의 아들은 귀하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.

